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주주총회 프리뷰(1)

(2021.2.4 사업본부 책임투자팀)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이하 주주총회 시즌)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함

◦ 총 2편으로 구성, 1편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환경 개선, 여성이사 선임, EHS 관련 법령 개정을 다루고, 2편은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의 영향 및 경영권 분쟁이 예견되는 기업을 소개함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환경, 얼마나 개선되는가?

□ 202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4호[1)]가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주총회 1주 전에 전자문서로 발송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직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던 관행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한이 주주총회 2주 전이라는 점에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소집공고 내 첨부하더라도 주주가 이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고, 1주 전 게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

-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이 분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으나, 올해는 3월 집중 현상이 계속될 전망임

◦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현상은 회사가 정관상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을 영업연도 말로 정하는 실무상 관행에 기인함

-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결권 행사·배당 지급)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일로부터 3월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 그러나 구 상법 제350조 제3항은 신주의 배당 기준일을 영업연도 말로 전제하고 있어,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도 영업연도 말로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 되어버림

---

1)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1.1.1.시행)

◦ 물론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4월 이후에 개최할 수 있었음[2)]

- 단, 이 방식은 주주의 배당 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어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임

◦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회사는 기준일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4월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다만,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 관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 3월 집중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아래는 정관 변경 예시로, 기준일을 12월 31일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로 변경함

〈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정관 변경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3조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삭 제〉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삭 제〉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여성이사 선임 확대 전망

□ 이사회 구성원이 전원 특정 성(性)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2020.2.4. 공포) 신설에 따라, 법 시행일(2020.8.5.) 2년 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 대상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상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경우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임

◦ 현행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3)]에 의거하여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2)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별도 기준일(배당 기준일≠의결권행사 기준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3월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근거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외에서는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과정 및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에서도 중요 고려 요인임

- **(미국)** 2020.12월 세계 2위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사회 다양성(최소 1명의 여성이사와 최소 1명의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 선임, 미충족 시 설명(explain))과 관련된 상장규정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상태임[4)]
- **(독일)** 직원 2000명 이상 상장기업 중 감독이사회는 최소 30% 이상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도에 더해 2021.1.6. 독일 연립정부는 3명 이상인 경영이사회에 여성 임원 1명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 법안을 승인함[5)]
- **(기관투자자-블랙록)** 블랙록은 이사회 및 경영진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US 30%Club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기업 대상 의결권 가이드라인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2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6)]
- **(의결권자문사-ISS)** 2021년과 2022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사회가 성별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장에 대해 반대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을 늘림[7)]
-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성별에 국한하지 않으나, 성별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안에 찬성하도록 규정함[8)]

□ 국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약 30%의 기업만이 법 시행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올해와 내년도 주주총회에서 여성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 151사[9)] 중 2020년 3분기 기준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 수는 총 48사로 확인됨
- 총 48사 중 40사는 1명, 7사는 2명, 그리고 1사는 3명의 여성 등기임원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표〉 여성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한 상장회사 현황

여성이사 수	기업 목록
1명 (총 40사)	**(일반)** SK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SK텔레콤, KT, 롯데쇼핑,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KT&G, 한화솔루션, 포스코인터내셔널, **네이버***,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넷마블, 강원랜드, 한온시스템, CJ E&M, 엔씨소프트, 롯데칠성음료, **호텔신라***, 금호타이어, 세아베스틸, 한진중공업, 한국캐피탈, **대상***, 효성

4) Nasdaq, "Nasdaq to Advance Diversity through New Proposed Listing Requirements", 2020.12.1.
5) Reuters, "German cabinet agrees quota for women on company boards", 2021.1.6.
6) BlackRock,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Proxy Voting Guidelines for U.S. Securities(2021)"
7) Compliance Week, "ISS 2021 proxy voting updates address racial, ethnic, gender diversity", 2020.11.17.;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유럽 대륙, 라틴아메리카 등이 신규 대상으로 포함됨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Ⅰ.1.4, 2021.1
9) 2019년 사업보고서 상 수치(자산, 자본총계 등) 기준

	(금융사) 미래에셋대우,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2명(총 7사)	**(일반)**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에쓰-오일, 카카오, OCI **(금융사)** KB금융지주, **삼성카드***
3명(총 1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볼드체는 사외이사가 아닌 여성이사를 선임한 기업

출처: DART 분기보고서(2020 3Q), 사업보고서(FY2019)

□ 현재까지 이사회 내 성 다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03개사(약 70%)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약 1년 반 내 103명 이상의 여성이사가 추가 선임될 예정이고,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상장회사의 이사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 풀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 기업에 적합한 여성이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후보를 파악하여야 함
- 이사회 다양성에 관심이 높은 기관투자자는 ① 이사회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역량구성표(skills matrix) 등을 통해 기존 이사회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여성이사를 선임하는지 ② 법상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주주관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선임된 여성이사 대부분은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파악되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성 사내이사 비율 확대에 관한 주주관여활동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2020년 3분기 기준 선임되어 있는 총 57명의 여성이사는 대부분 사외이사(48명)이며, 나머지 이사는 사내이사(4명), 기타비상무이사(3명), 비상임이사(2명)로 확인됨
- 한편 선임된 여성 사내이사 4명 중 2명[10]은 지배주주일가와 관련 있는 이사로 실질적으로 이른바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 사내이사는 2인[11]에 불과함
- 법상 요건 충족을 넘어서 여성의 실질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관리자급 여성임원 비율[12]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자급 여성 임원 육성책 마련을 요구하는 형태로 주주관여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EHS[13]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주주관여 강화

□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14]

- 동 법에 따르면, ①사업주, 경영책임자등[15]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②중대산업재해

10) 호텔신라(이부진 대표이사), 대상(임상민 전무이사)
11) 네이버(한성숙 대표이사), 삼성카드(이인재 부사장)
12) GRI 지표 405-1에서는 조직의 거버넌스 기구에 성별 비율을 공시하라고 권장하고 있음
13)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14)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가능하고 ③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CEO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구분	결과	개인	법인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주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주2)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함

□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한층 강화됨

◦ 동 법 제14조가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나아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 수정안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됨

□ 이러한 법령 개정에 힘입어 기관투자자는 EHS 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한 투자를 배제·철회하거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으로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가령 이사회에 1)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EHS 관리체계 강화, 점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2)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 투표하거나 3)주주관여를 통해 EHS 관련 제도를 도입 또는 전문가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 조선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의 회사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규제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 영국 금융회사 Federated - Hermes는 글로벌 경비업체인 G4S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화 진행 및 현장탐방 방식으로 주주관여를 10년간 이어옴[16)]

- 구체적으로 사망자 수치가 높았던 해에 선임된 사외이사, CSR위원회 위원장, CEO,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성과 및 공시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이슈를 검토함
- 그 결과 안전보건 성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LTI(Lost Time Injury, 근로손실재해율)를 공시하며, 리더십 매니지먼트 그룹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성과 목표를 도입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 **(국내 사례)**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APG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주관여를 수년간 이어옴[17)]

-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실제로 정책 강화가 관행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함
- 특히 발주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매자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국민연금)** 한편, 국민연금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산업재해 논란이 있는 포스코, CJ대한통운 등을 대상으로 공익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검토 중임[18)]

-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회가 2월 9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19)],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다르기에 실제 주주제안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임

■

사업본부 책임투자팀

담당부서(문의처)

이수원 팀장(02-6951-3851, swlee@cgs.or.kr)

임현경 매니저(02-6951-3724, hkim@cgs.or.kr)

정유진 매니저(02-6951-3727, yjjung@cgs.or.kr)

16) 임현경, 국내 환경(E)·사회(S) 주주관여 현황 및 참고사례, KCGS Report 10권 12호
17) APG,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18
18) "국민연금, 포스코·삼성물산·KB금융 등 7곳 사외이사 추천", 파이낸셜뉴스, 2021.1.28
19) "국민연금, 노동자 줄사망 기업에 제동 걸까", 이데일리, 2021.2.3